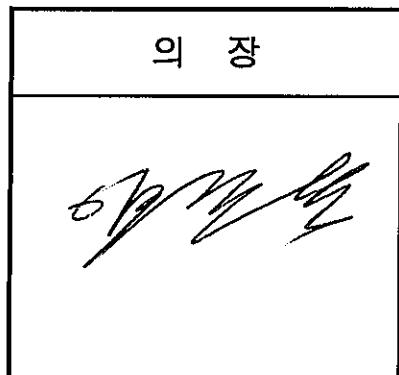


시장제출 의안 접수 및 회부



2018. 3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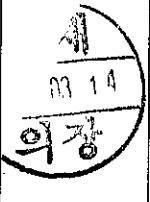
No. 81

서울특별시의회
(의사담당관)

시장제출 의안 접수 및 회부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에 따라 의안이 접수되었기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.

□ 접수의안

의안 번호	의 안 명	요 지	발의·제출 (소관위원회)	비 고 (발의일)
2416	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p><input type="checkbox"/> 「공직선거법」 제24조의3에 따라, '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'에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,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등을 일부 변경 하려는 것임.</p> <p>- 「공직선거법」(별표 3) 개정에 따른 자치구의회의원 총정수 변경 (안 별표)</p> <p>▶ 증 4명 : 현 419명 (지역구 366, 비례대표 53) ⇒ 423명 (지역구 369, 비례대표 54) ※ 강서구 2명 증원(지역1, 비례1), 강남구 2명 증원(지역2)</p> <p>▶ 자치구별 선거구 확정 : <u>4인선거구 7개</u> 시범도입, <u>3인선거구 확대 5개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공직선거법 개정 영향지역 → 4인선거구 : 4개(강서 1, 강남 2, 은평 1) → 3인선거구 : 5개(강서 3, 강남 2)· 공청회 의견 반영(인구밀집 차 개선효과가 높은 지역) → 4인선거구 : 3개(강동 2, 동대문 1)	시장 (행정자치) 	2018. 3.14.

□ 향후계획

-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안 회부
불임 : 관련 의안 각 1부. 끝.